

재외 피폭자의 미지불 수당 지급에 대하여

일본을 출국함으로써 지급이 정지되고 그 동안 미지불 상태로 있던 1997년 11월분 이전의 수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하였기에 알려 드립니다.

아울러, 절차 등에 대해서는 '재외 피폭자의 미지불 수당 지급에 대한 Q&A'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또한, 이 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후생노동성이나 수당을 지급받았던 도도부현, 히로시마시, 나가사키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지급 대상

과거에 수당 지급 인정을 받았던 분 중에서 일본을 출국함으로써 수당 지급이 정지되고, 시효를 이유로 지불되지 않은 1997년 11월분 이전의 미지불 수당이 있는 분

○ 대상이 되는 수당의 종류

- 건강관리수당
- 보건수당
- 의료특별수당
- 특별수당
- 원자폭탄소두증수당
- 의료수당(1981년 8월에 폐지)